

환경부고시제2003-189호

하수도법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목적

보은군 마로면 및 탄부면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종말처리하여 방류하천인 적암천 및 대청호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보은군수
- 주소: 충청북도 보은읍 이평리 45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위치: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12-21
- 부지면적: 1,432m²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칭: 마로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500m³/일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 예정배수구역: 949.69ha
- 예정처리구역: 101.41ha

마. 사업시행기간: 2003년 ~ 200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붙임" 참조

사. 기타 관계서류는 보은군 환경과(043-540-329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환경부고시제2003-181호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

1. 사업목적

논산시 동지역 및 강경읍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말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변경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논산시장
-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24번지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위치: 논산시 동화동 534-1번지 일원
- 부지면적: 64,892m²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칭: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30,000m³/일 (금회 20,000m³/일)
- 처리방법: 표준활성슬러지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변경)

- 예정배수구역
 - 당초 - 4.042ha
 - 변경 - 6,810ha(증: 2,768ha)

예. 예정처리구역

- 예정처리구역
 - 당초 - 562ha
 - 변경 - 848ha(증: 286ha)

마. 사업시행기간

○ 당초 - 1998년~2001년

○ 변경 - 1998년~200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금회 증설분): “붙임” 참조
사. 기타관계서류는 충청남도 논산시 수도사업소(041-730-132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경인지방환경청고시제2003-3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곡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03년 10월 28일

경인지방환경청장

◆ 현곡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고시 ◆

1. 공동처리구역

○ 구분: 현곡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일원

- 면적: 727,668m²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 도면등은 평택시 공영 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경인지방환경청고시제2003-4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현곡지

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28일

경인지방환경청장

◆ 현곡지방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나.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3,600m³/일

- 설치면적: 9,948m²

다.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2003년 7월 ~ 2005년 6월

- 사업지역: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일원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 설치비: 12,000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386,058천원/년

마. 예상원인자 범위

- 현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에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제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국고 50%, 원인자부담 50%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평택시 공영개발과 (031-659-4444)

나. 열람기간: 30일이상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3-3호

한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

시설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1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1. 제정이유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1999-163호)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2항제2의2호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된 하강유역에 대한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을 지정하고자 함.

나. 팔당호 등 영향권역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구역밖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폐수무방배출시설로 설치할 경우 입지를 허용하되 이 경우 준수해야할 설치·운영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나, 특별대책지역중 도시계획구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서 병원 등 주민편의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포함하지 않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시 준수해야할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사고대비 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정함.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시 준수해야할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사고대비 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정함.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기관은 방지사설 설치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지사설 운영,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고시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http://hg.me.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2003-7호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1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1. 제정이유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1999-163호)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2호 규정에 의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금강유역에 대한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을 지정하고자 함.

나. 대청호 영향권역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서 「유

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할 경우 입지를 허용하되 이 경우 준수해야할 설치·운영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나, 특별대책지역중 도시계획구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서 병원 등 주민편의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시 준수해야할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사고대비 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정함.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기관은 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지시설 운영,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고시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http://gg.me.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3-5호

낙동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1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낙동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배출시설지정 ◆

1. 제정이유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1999-163호)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2호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된 낙동강유역에 대한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을 지정하고자 함.

나. 물금·매리 주변지역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또는 구변구역 밖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포함하지않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할 경우 입지를 허용하되 이 경우 준수해야할 설치·운영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나, 특별대책지역중 도시계획구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서 병원 등 주민편의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포함하지않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시 준수해야할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사고대비 시설 등에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정함.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기관은 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지시설 운영,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고시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http://ndg.me.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3-193호

환경부 소관 고시중 “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지정” 고시가 권한위임 등으로 준치의 필요성을 상실하였기에 이를 폐지합니다.

2003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지폐지◆

○ 고시번호: 환경부고시 제1999-163호 (1999.10.22)

○ 제목: 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3-29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9.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1월 6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의 별표1의 유독물 고유번호 97-1-176의 화학물질의 명칭란 중 “안티몬 화합물질 [Antimony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사나화 안티몬(V) (Antimony pentoxide)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과 산화안티몬(III) (Antimony trioxide)을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을 “안티몬 화합물질 [Antimony compound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산화 안티몬 (Antimony(V) pentoxide, Antimony(IV) tetroxide), 황화안티몬 (Antimony(V) pentasulfide, Antimony(III), 안티몬산(HSbO3) 염류(antimonic(V) acid, salts)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토막상식

우리말 단위: ○두름·물고기 20마리를 10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갓, 못·생선 10마리 ○거라오이나 가지 50개 묶음 ○담불벼 100정 ○강다리쫄면 장작 100개비 ○가마갈모, 찜지 100개 ○마지기는 200평, 밭 300평 ○모숨·모나푸성귀 한 줍 ○쌈비늘 24개 ○우라기와 2,000장 ○잡무, 배추, 마늘 100개 ○쾌복어 20마리 ○툇김 100장